

우리나라와 EU간의 주세분쟁과 주류산업의 대응방안

1. 머리말



옥 무 석
〈이화여대 법학과교수〉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유럽연합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증류주라고 할 수 있는 소주의 酒稅率體系가 보드카와 같이 同種關係에 있거나 위스키와 같이 競爭關係에 있는 輸入酒類에 대하여 差別的이어서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제3조에 違反된다고하여 WTO에 提訴하였다고 한다. 또한 우리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협상대표단을 WTO가 있는 제네바로 파견하여 금년 5월 29일과 30일에 걸쳐 유럽연합 및 이에 보조참가한 미국 및 캐나다와 각각 WTO제소에 따른 첫번째 양자 협상을 가진바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제소 및 대응과정은 이미 일본이 이와 비슷한 사례로 제소당하여 WTO의 분쟁해결패널로부터 차별이라는 판정을 받은 바 있어 이미 예견되어 온 바이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주세협상에 대비하여 금년 4월 22일 한국조세연구원이 개최한 주세제도 관련세미나에서 증류주에 대하여는 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하여 주세율을 개편할 것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하였다. 이 案에 의하면 위스키 주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한편, 소주의 주세율은 62.5%로 인상하고 맥주의 주세율은 100%로 인하하도록 하고 있다. 현상적으로 나타난 바에 의하면 이번 주세개정의 지침은 內·外國產 蒸溜酒類간의 差別待遇가 事端이 된 것이고 이의 해결이 긴급한 문제이기는 하다. 그러나 酒稅率決定體系의 變化는 다양한

■ 目 次 ■

1. 머리말
2. 유럽연합과의 주세분쟁의 경과와 주요쟁점
3. WTO/GATT의 차별적 또는 보호적 내국세의 개념
4. EU/EEC의 차별적 또는 보호적 내국세의 개념
5. 주류분쟁에 대한 대응방안

酒類業간의 市場分割에 궁극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도 주세가 産業내의 中立性에 미치는 영향을 새삼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 나아가서 주세법을 임시 融合적으로 손질할 것이 아니라 차제에 근본적인 개정을 가하여 투명화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우리나라와 유럽연합간의 주세분쟁에 관한 대응전략을 검토하고 결론에서 주류업계의 대응에 관한 장단기 과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2 유럽 聯合과의 酒稅紛爭의 經過와 主要爭點

우리나라와 유럽연합간의 주세체계가 문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1993년경 유럽연합과 와인 등의 수입주류에 대한 주세의 세율체계가 차별적이라고 하여 협상한바 있고 이 결과가 1993년 및 1995년말의 주세법 개정에서 반영된 바 있다. 그리고 이에 앞선 1990년말 개정 주세법에서는 일본의 유럽연합과의 주세분쟁결과를 참고삼아 주류의 분류체계를 정비한 바 있다. 즉, 종전에는 주류의 제조원료, 첨가물 및 제조방법을 기준으로 분류하였으나, 동법에서는 최종제품의 성상을 기준으로 분류하되 그 종류도 종전의 18종류에서 11종류로 단순화 하였다. 유럽연합과의 주세협상 결과를 세율에 반영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세의 세율이 문제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주세결정체계는 다른 나라에서는 드문 증가세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유럽연합의 내부적으로는 각 회원국이 주류에 대하여 가지는 이해관계가 단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와인과 브랜디의 경우는 프랑스, 이번의 증류주의 경우는 영국이 위스키의 주산국으로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아직 문제가 제기되지는 않았지만 맥주의 경우는 독일이 각각 유럽연합내의 주요 이해당사국이라고 할 수 있는

데 이들 국가의 이익을 반영하여 과상공세를 취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와인협상의 경우에는 아직 WTO가 성립되기 전이어서 유럽연합과의 양자협상을 통하여 해결하였으나, 지금은 WTO라는 신무역질서가 형성되어 있어 유럽연합이 이번 증류주 분쟁을 동 기구의 무역분쟁해결절차에 의존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유럽연합의 주장을 요약하여 보면 국산 소주의 주세체계가 수입양주에 대하여 차별적이라고 한다. 그 근거는 GATT 제3조의 內國民待遇原則의 違反이다. 동조 제3조 제1항에서는 무차별원칙의 하나인 內國民待遇原則의 기본정신을 선언하고 있는데, “당사국들은 內國稅 기타 과징금 그리고 상품의 국내판매, 판매의 청약, 구매, 운송 및 사용에 영향을 주는 법, 규정 기타 준수사항 등을… 輸入品 또는 國內生産品에 관하여 國內生産을 保護하기 위한 方向으로 適用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하고 있다.

또한 이어서 동조 제2항의 제1문은 자국상품에 대한 同種商品(like domestic products)에 대한 差別禁止를 規定하고 있다. 즉, “한 당사국의 영토에서 다른 당사국으로 수입된 상품은 수입국가의 동종물품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부과되는 수준보다 더 무거운 내국세 기타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이 조항은 외국수입품이 국내생산품에 비하여 차별적인 대우를 받을 때 적용되는 규정으로 直接 또는 間接的 差別을 모두 禁止하고 있다. 또한 동조동항 제2문에서는 자국상품과 直接的으로 競爭的이거나 代替可能的 商品(directly competitive or substitutable products)에 대한 差別禁止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외 당사국들은 다른 방법으로 제1항에 규정된 제반원칙에 반하는 방법으로 내국세 기타 각종 부담금을 수입제품 또는 자국상품

에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한다.

유럽연합의 제소에 대하여 협상에 임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은 재경원이 작성한 보도참고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소주와 위스키가 직접 경쟁 및 대체관계에 있다는 일본에 대한 WTO패널의 결정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에 불구하고 협상에 임하는 것은 가급적 양자타결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GATT의 분쟁해결규칙및절차에관한양해(The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DSU)의 정신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제1차 협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협상안을 보면 소주와 위스키·보드카 등 증류주에 대한 주세율은 알코올 도수에 비례하여 조정하고 주세의 부가세인 주세분교육세는 증류주에 대하여 단일화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구체적으로 증류주에 대한 주세율을 알콜 도수 1도당 2.5%로 하여 도수가 40도인 위스키의 세율은 현행대로 100%로 하고, 도수가 25도인 희석식 소주는 현행 35%에서 62.5%로, 도수40도인 증류식소주는 현행 50%에서 100%로 인상하도록 하고 있다. 주세분교육세의 현재 적용세율은 기준세율이 10%이고 세율이 80%이상인 주류는 30%로 할증되므로 소주는 10%, 위스키, 브랜디 및 보드카는 30%인셈인데 이들간에 차이를 없애고 단일화하여 20% 또는 30%로 조정하기로 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개정세율의 적용방안으로는 앞으로 3년 내지 4년간 단계적으로 이행하기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유럽연합측은 우리의 제시안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수입주류와 국산주류에 세부담의 차별이 해소되는 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분쟁해결을 다음단계인 패널구성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러한 유럽연합과 미국의 酒稅攻勢는 貿易

攻勢의 하나로 그 패턴이 다른 무역공세의 경우와 동일한 과정을 보이는 점이다. 즉, 일본을 제외한 세계의 주요 경제권내의 국가들이 對日攻勢를 편 후 일본과 주류의 기호와 음주문화 그리고 주세법의 입법구조에서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같은 유교권 국가인 우리나라에 대하여서 동일한 공세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현재로는 유럽연합이 우리의 협상안을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본격적으로 분쟁절차에 들어가서 이의 해결을 위한 패널을 구성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전망하기 어렵다. 이 문제의 쟁점은 국경세조정(border tax adjustment)으로 인한 자유무역의 장애요인의 배제라는 WTO정신을 구체화한 차별적인 내국세의 부과 금지위반문제이다. 구체적으로는 국산주류와 수입주류간의 차별적인 세율의 부과에 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는 쟁점인 차별적이고 보호적인 내국세의 부과금지의 개념을 이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분쟁사례를 통하여 정립한 WTO/GATT와 우리와 주세 분쟁 당사자인 유럽연합의 사례를 항목을 바꾸어 살펴보기로 한다.

3. WTO/GATT의 차별적 또는 보호적 내국세의 개념

WTO가 출범한 이후 국내무역의 분쟁은 WTO/GATT의 분쟁해결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구에 축적된 분쟁 해결의 사례가 많은 편이 아니다. 이들 분쟁은 소위 국경세 조정(border tax adjustment)에 관한 것으로 국경세조정은 간접세의 문제로 한정되며, 또한 기구의 성립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이다. 주류에 관한 것으로는 일본과 EC간의 소주사건, 미국과 캐나다간의 주류사건과 칠레와 EU간의 주류사건 등이다. 이들의 경우 동종제품 그리고 경쟁관계 또는 대체관계에서는 제품의

개념과 수입품에 대한 과세가 국내산업의 보호 또는 차별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이 핵심이다. 이들 사건의 해결경과에 대하여는 酒類工業誌 前月號(1997년 3월호)에 소개되어 있어 생략하기로 하나, 일본의 제1차 및 제2차 소주사건과 칠레의 증류주인 피코스사건은 주로 GATT 제3조2항의 차별적 내국세부과에 관한 것이고, 미국과 캐나다간의 주류사건은 세율이외에도 차별적인 주세행정 제도를 문제삼은 사건이다. 구체적으로 수입맥주 및 포도주에 대하여서만 도매상을 통하여 판매하도록 한 규정, 특정지역에 알콜함유 포도주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 그리고 특정 포도를 원료로 제조한 포도주에 대한 저율의 소비세부과 등이 함께 문제삼아 동조 제4항위반여부도 함께 제소한 점이 특색이다.

4. EU/EEC의 차별적 또는 보호적 내국세의 개념

차별적 또는 보호적 내국세의 부과 여부를 둘러싼 분쟁은 경제가 일정 지역단위로 통합되어 가는 과도기적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였다. 차별적 또는 보호적 내국세의 금지원칙은 GATT 제3조이외에도 EU의 전신인 EEC설립조약 제95조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즉, 동조 제1단은 “회원국은 동종의 국산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부과되는 내국세보다 고율의 내국세를 다른 회원국의 제품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하여 同種製品에 대한 差別的인 內國稅賦課의 禁止를 정하고 있고, 이어서 제2단에서는 “회원국은 생산을 간접적으로 보호하는 성격의 내국세를 다른 회원국의 제품에 대하여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하여 保護的 內國稅賦課를 禁止하였다.

한편 이러한 차별적인 내국세의 부과에 대한 분쟁은 유럽법원에 선결적 판단을 의뢰하거나 또는 직접 유럽법원에 제소하게 되어 있어 이에 관하여 제법 많은 유럽법원의 판례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유럽법원의 판례를 분석하여 보는 이유는 현안의 직접 상대 당사자이어서 이에 대한 기본 정서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는 점과 유럽공동체설립조약제 95조의 조문과 GATT제3조의 조문이 거의 동일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점에서 현안의 해결과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추가적 주세압력을 예측해 볼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동 판결에 나타난 차별적 또는 보호적 내국세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1) 適用稅率의 差異

적용세율의 차이는 차별적인 내국세부과의 가장 전형적인 예이다. 이에 해당하는 유럽법원의 판결을 보면 다음과 같이 세분된다. 첫째로는 과세물품의 전부에 대하여 단순하고 명백한 세율의 상이가 있는 경우이다. 1970년 판결한 이태리코코아 粉末稅事件이다. 이태리가 1950년과 1954년법에 의하여 자국내에서 생코코아를 수입하여 가공한 코코아분말보다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코코아분말에 대하여 차등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비록 전자에는 원료의 가공공정이 개재되고 이의 비용이 고액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조세외적 요인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이는 차별적인 내국세의 부과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과세이외에 관련제품의 일부에 대하여 부분적인 세율의 상이가 있는 경우이다. 관련사건은 1976년 판결한 독일 麥酒稅 賦課事件이다. 당시 서독의 1952년 맥주세법에서는 국산맥주와 수입맥주간에 차별적인 세율의 내국세를 부과하고 있었다. 국산맥주의 경우 생

산량에 비례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수입맥주의 경우에는 생산량과 무관하게 단일한 세율로 적용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독일의 맥주세의 세율결정체계는 독일의 맥주생산기업 중 대기업은 오히려 외국기업보다 불리한 역차별과세의 효과가 있었으며, 중소기업의 기업에는 외국기업보다 유리한 즉, 독일맥주산업의 전부가 아닌 일부 산업부문에 차별 효과가 있는 점에서 특징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세율체계는 중소기업의 맥주생산이 많은 독일기업의 실정을 감안할 때 사실상 국내 중소양조기업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에 대하여 유럽법원은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하여 동종의 국산품에 대한 과세방식과 다른 방법으로 과세하여 부분적이지만 수입품이 중과세되는 것은 차별적인 과세의 경우가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세책로는 특정국내제품에 대하여 감면제도를 적용한 결과 세율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이에 관하여는 1978년의 독일령酒제조회사인 Hansen社 판결과 1980년의 이태리 再生油稅 판결이 있다. 이 판결은 특정국산품에 대한 감면세제도가 차별적과세제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유럽법원의 Leading case로 유명하다. 이에 대한 유럽법원의 결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1) 사회경제적목적에 기한 특정 국산품의 감면제도는 객관적이고 타당성 범위내의 것이면 합법이고 이러한 감면제도를 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회원국 정부의 권한에 속한다.

2) 그러나 회원국은 특정 국산품에 대한 감면세제도를 동일한 조건을 충족하는 다른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이들 양자 간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면 세율의 상이에 기한 차별적과세가 된다고 한다.

2) 課稅標準의 差異

다음으로는 과세표준의 취급이 다른 경우이다. 즉 동종의 국산품과 수입품에 대하여 세율이 동일하여도 과세표준이 다른 경우에는 차별적인 과세가 발생한다고 본다. 이의 대표적 사례는 유럽법원이 1970년 판결한 벨기에 木材稅사건이다. 1927년부터 시행되어 오던 벨기에의 목재세는 국산목재와 수입목재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어왔다. 그러나 국산목재에 대한 과세는 입목상태 또는 벌채한 상태로 인도된 목재를 재제업자에게 판매하는 시점에 가격을 산정하고, 수입목재에 대하여는 국내소비를 위하여 수입신고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하였다. 따라서 과세표준을 비교해 보면 전자의 경우는 입목 또는 벌채된 목재를 재제업자에게 판매한 가격에 의하게 되나, 후자의 경우는 가공 후의 목재가격에 의하게 되므로 수입목재의 경우는 가공에 의하여 부가된 부가치만큼 전자에 비하여 높게 계산된다. 이와 같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나 과세표준이 상이한 경우는 결국 차별적인 과세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3) 納稅條件의 差異

또한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세율이 동일하여도 과세표준이 다르면 차별적 과세가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율이 동일하더라도 납세조건이 다르면 차별적과세가 발생한다고 한다. 이에 관한 판결로는 유럽법원이 1980년도 판결한 아일랜드蒸留酒사건을 들 수 있다. 1975년 말부터 시행한 아일랜드의 消費稅令 제221호는 증류주 소비세의 세율을 국산품과 수입품에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동 법령은 이들 주류의 납부조건에 관하여는

국내 주류생산업자와 수입업자를 다르게 취급하였다. 국내의 주류업자에 대하여는 보세창고에서 주류를 반출할 때 4내지 6주간의 納稅猶豫를 인정하였다. 다만, 주류업자는 납기를 연장하기 위하여 추가의 소비세와 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였다. 반면 수입주에는 이와 동일한 납세유예를 전혀 인정하지 않으므로 수입업자는 주류를 수입하거나 또는 보세창고로부터 반출할 때에 반드시 소비세를 납부하도록 하였다. 유럽법원은 이 경우 비록 국내 주류생산업자가 납세유예를 받기 위하여 추가의 소비세를 납부하고 보증금을 납부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추가부담은 수입업자가 납세유예를 받지 못해 지는 금융부담과 비교하면 비교가 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차별적 과세성을 인정하였다.

4) 實質的 差別課稅

수입품에 대한 差別的 課稅는 이상의 판례에서와 같이 동종의 국산품과 비교하여 세율, 과세표준, 납세조건 등에 있어 수입품에 존재하는 명백한 과세취급상의 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수입품에 대한 차별적 과세는 이러한 형식적인 차별이 없어도 발생할 수 있다. 상품의 세율을 원산지에 따라 정하는 것은 형식적 차별임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방식대신 商品의 原料, 成分, 製法, 性能 등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달리 정하여 소정의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은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이들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상품은 표준세율 또는 할증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처럼 객관적인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에 대하여는 모두 원산지가 국내외임을 묻지 아니하고 동종의 세율을 적용하므로 형식적으로는 차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경감세율의 적용요건을 국산품을 겨냥하여 규정하여 둔다면 수

입품에 대하여는 사실상 차별적인 과세가 발생하게 되는 셈이다. 위에서 이미 예를 든 1980년의 蒸溜酒 사건도 이러한 실질적 차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뒤이은 1981년에 판결한 이태리의 工業用變性알콜稅 사건 등이 이의 구체적인 예이다.

5) 租稅收入의 支出用途

유럽법원의 판례를 보면 차별적 과세의 요인과 형태는 이상에 그치지 아니하고, 동종의 국산품과 수입품에 대한 과세요건이 형식적 및 실질적으로 모두 동일하다고 하여도 징수한 조세수입을 국산품을 육성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충당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차별적인 과세가 된다고 한다. 예컨대, 일정한 상품에 대한 국내의 시장의 형평을 위한 市場平衡基金을 설정하고, 그 재원을 위하여 일정한 조세를 수입상품과 국내상품에 동등하게 부과하더라도 이로부터 형성된 재원을 국내 동종산업의 육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을 통하여 과세표준을 상계하는 결과가 되어 차별적 과세에 해당한다고 한다. WTO체제하에서는 이는 다시 보조금의 지급문제로 취급될 것이다.

6) 間接的으로 賦課되는 內國稅의 差別的 適用

끝으로 이러한 차별적 적용은 상품에 직접 부과되는 내국세의 차별적 적용뿐만 아니라 상품에 간접적으로 부과되는 내국세의 차별적 적용으로부터도 발생한다. 이에 관한 판결로는 1977년 판결된 Schoettle社 사건이 있다. 당시 서독정부는 1968년 도로화물운송세법을 제정하여 도로화물운송에 대하여 중량과 거리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었다. 이 제도에 의하면

국내장거리운송과 국제운송에는 원칙적으로 과세하는 반면, 특정의 국내 단거리 운송에는 과세를 하지 아니하고 있었으므로, 다른 회원국 상품의 국제적 운송은 국내운송과 비교하여 볼 때 대부분 과세대상이 되는 불이익을 받고 있었다. 주의를 요하는 점은 이 사건의 경우 운송회사들이 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운송물인 수입상품의 수입회사(이 사건 원고인 Schoettle社)가 도로화물운송세가 유럽공동체조약 제95조가 정하는 '상품에 간접적으로 부과하는 내국세'에 상당하는 것이라고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유럽법원은 도로화물운송세가 운송용역에 대하여 중량과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과세되는 조세이긴하나 이러한 조세는 운송운임에 전가되어 제품의 가격에 바로 반영되며 또한 유럽공동체조약 제95조의 취지를 감안하면 가능하면 차별적 조세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이러한 형태의 과세도 상품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5. 酒類紛爭에 대한 對應方案

지금 우리가 겪는 주류분쟁은 우리 경제가 세계화해 가는 과정에서 넘어야 하는 산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 주류산업 그리고 우리 경제자체가 세계적인 척도하에 재편되어 갈 것이므로 이에에는 구조조정 과정이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주류분쟁의 먼 걸음이 주는 시사점은 주류산업의 구조조정이다. 이 바람은 멀리서 불어 온 것이긴 하나 가능하면 국내 주류업체가 주도하는 자율적인 것이면 바람직하겠다.

이런 점에서 최근에 일부 酒類業界간의 戰略的 提携는 주류시장의 재편과정에서 주류업체가 나아갈 방향의 하나를 보여 주고 있다.

전략적 제휴의 형태는 다양하여 임의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우나 산업의 구조조정수단의 하나로 유용한 것임은 틀림없다.

또한 이러한 주류시장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종전에 주류가 주던 국민의 건강을 해하는 demerit goods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하도록 프리미엄급 증류주를 중심으로 한 국산 증류주의 고급화 전략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소비자가 술을 마신다기 보다는 즐기도록 유도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주세협상의 결과가 주세체계에 반영되면 주류소비패턴의 변화를 줄 것으로 보므로 이러한 변화의 추이를 사전에 예측하여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예상되는 주류소비패턴으로는 양주에서 큰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양주 특히 위스키와 브랜디는 고급주로서 일종의 신분의 징표(예, 최근의 양주 애드워드 13세사건을 상기하라)로 되어왔으나 고가주의 이미지를 벗으면 양주선호의식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신문보도에 의하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양주의 수입량에 있어 세계 제4위국이라고 하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꼬냑생산회사의 부사장이 직접 방한하여 판촉활동을 벌일 정도라고 하나 조세부담격차의 축소로 인한 국내외 구입가격 격차의 축소는 양주의 해외 개인반입을 감소하게 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자율적인 소비감소로 이어지리라 본다.

다음으로 주세분쟁의 결과를 반영한 주세법의 개정이 불가피 하다. 단기적으로는 협상에서 타결된 바에 따라 증류주를 중심으로 수입주류와 국내생산주류간의 적용세율의 조정이 따를 것이나, 이미 차별적 내국세의 개념이 우리가 예정하는 것 보다는 대단히 폭이 넓고 다양한 점을 감안하면 차제에 전면적인 주세법의 개정을 시도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이미 앞서 본 바와 같이 유럽연합은 경제통합을 통

하여 개별 회원국이 경제의 국제화를 이룩하면서 각종 세제를 조화한 바 있다. 이러한 세제조화의 하나로 담배 또는 주류등 개별소비세의 통합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이러한 세제통합은 결국 장기적으로는 산업의 구조조정을 유도하며 이는 대외적인 경쟁력의 우위로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세법개정에 보다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주세체계의 투명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 이를 위하여서는 주세법상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의 조정, 국내주류와 수입주류간 그리고 대중주와 고급주간의 조세부담의 균형을 감안한 입법체계의 개선, 주세행정체계의 투명화 및 탈규제가 개정의 기본지침이 되어야 한다. 끝으로 주세협상은 通商協商에서 選擇할 수 있는 戰略의 하나로 협상대상국과 교환할 수 있는 협상카드의 하나인 만큼 통상 전략에 있어서도 보다 큰 안목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Many a dangerous temptation comes to us in gay, fine colours,
that are but skindeep.

여러가지 위험스러운 유혹들은 겉으로만 화려하고 다채로운
색깔로 우리에게 찾아든다.

- Matthew Henry -